

2023년도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0.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8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34건(안전번호 제2023-232177호~23601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32177호(순번 1번)는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만화를 불법 번역하여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2178호~232182호(순번 2번~6번)는 웹하드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2183호~232211호(순번 7번~35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2212호~232219호(순번 36번~43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232220호~236010호(순번 44번~3834번)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6,78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8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22894호~2317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8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별 처리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90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8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검토보고서 상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불법 번역된 만화를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의 게시판인 '♫♫ ♫♫♫'에 '★ ★) ★★ ★★ ★★-★★'라는 제목으로 출판 만화 '◇◇◇◇ ◇◇ ◇◇'의 불법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불법 번역된 만화를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만화인지?
- 이숙형 부장: 국내 출판사 두 곳에서 각기 다른 작화로 출판하고 있음.
- B 위원: 국내 출판중인데 무단으로 번역해서 공유하는 이유가 있는지?
- 이숙형 부장: 해당 회차는 일본에서는 공개되었으나 국내에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회차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6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 총 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는 모두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중인 저작물들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번~6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6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3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이 게시된 사안 총 6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7번~35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

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 내지 35번에 대해 시정권 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번~4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30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6번~43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43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4번~383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6,780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거미집'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16번은 영화 '거미집'으로, 2023. 9. 27.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판매중임.
(영화 '폭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21번은 영화 '폭로'임. 2023. 9. 20. 개봉해서 현재 OTT 등에서 단품으로 판매중인 최신 영화를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크리에이터'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8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크리에이터'로, 2023. 10. 3. 개봉하여 현재 OTT 등에서 판매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4번부터 3834번까지 총 6,780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웹소설, SW,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각자 모니터링 자료를 확

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 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웹소설,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4번~383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32177호~236010호(순번 1번~3834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2894호~23177호(순번 1번~284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27.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홍승기